

森林作業論(5)



任 慶 彬

〈전호에서 계속〉

1945년 2차대전이 종식되고 얼마 안가서 전국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림 행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 입각한 산림 작업종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에 있어서 필자의 문헌수집에는 미비한 점이 있을 터이나 우선 제한된 정보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필자의 짐작으로서는 1960년에 이르기 까지에는 우리나라 임업기술과 이론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종자취급, 양묘, 그리고 묘목식재 등에 대한 현장기술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고 보아지나 지금도 그러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간벌기술이라든가 숲의 갱신(更新) 기술은 입에 올릴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때까지는 임업기술의 적용이나 정책

의 입안과 수행이 어수선한 시대였다고 회상된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인 산림작업종의 내용을 끄집어 내는것은 다만 본 논설의 전체적인 체계를 마무리 하는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① 1965년 대한산림조합연합회에서 간행한 작은 책자에 『營林計劃』이 있다. 이 책안에 國有林과 民有林에 대한 經營(또는 营林) 계획편성규칙(또는 요강)이 있다. 국유림과 민유림의 작업종에 대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농림부훈령 제99호로서 1964년에 발효된 것이다.

먼저 국유림경영계획편성규칙 제18조에 다음과 같은 작업종 구분이 나타나 있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민유림영림계획편성 요강 중 제21조의 작업종의 결정의 내용을 아울러 보인다.

국유림 경영계획 편성	민유림 영림계획 편성
1. 用材林作業	1. 喬林作業
擇伐作業	擇伐作業
皆伐作業	皆伐作業
母樹作業	母樹林作業
2. 薪炭林作業	2. 矮林作業
3. 中林作業	3. 中林作業
4. 竹林作業	4. 竹林作業

이상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일단 무난하게 제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도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별반 문제될 것은 없다.

② 1972년에 『조림은 이렇게』라는 93면의 책자가 산림청 간행물로 나왔다. 이책의 내용은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다. 이책은 기술인, 학생, 일반인에 대한 기술안내서로 마련된 것이다. 그안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보속생산에 지장이 없는 법정림(法正林)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1년생부터 벌기까지의 임목이 거의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면적에 일정한 성장을 할 수 있어 일정한 축적이 계속되어 법정 축적이 되게하고…』

이상의 내용은 무지개와 같은 이상형의 숲(경영대상)으로 이것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선망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생각해야 한다. 한 숲이 경영단위가 될 때 총체적으로 이러한 개념적 상태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이 있다.

『작업종의 선정: 산림을 가꾸는 방법을 임목의 벌채 또는 개신방법의 차이에 따라 나눈 것을 작업종이라 하는데 작업종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점은 입지의 조건,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상태,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 수종, 사업의 집약도, 그지방의 임산물 수요관계 등이다.』

이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종의 열거는 없다.

③ 1979년에 산림청例規 제 166호로 사

유림영림계획운영요강이 작성되었는데 그 목적은 山林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의 작성, 인가, 변경과 그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유림영림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다(1). 제10조에 作業種을 들고 있는데 사유림에 대한 다음 4가지 작업종이 채택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1) 추풍령벌채작업
- (2) 소구역벌채작업
- (3) 웨림작업(帶狀, 小面積皆伐)
- (4) 택벌작업(명활산성 벌채포함)

필자의 견해이지만 추풍령 벌채라든가 또 명활산성벌채라든가 하는 것은 작업종의 명칭에 관련해서 어색하며 그러한 벌채법이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론화해서 생태학적 타당성이 시인되는가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벌채종(작업종, 개신방법)은 다년간 임업 계에 투신한 사람에 의해서 창안되고 그 결과가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이 예규는 1992년 3월 28일자로 산림청 예규 제 374호로 고쳐졌다. 이 개정예규 제 11조(작업종)를 보면 「작업종은 지리적인 여건과 임상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 중에서 결정한다』 하고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 (1) 개벌작업
- (2) 택벌작업
- (3) 모수작업
- (4) 웨림작업

이때 추풍령이라든가 명활산이란 말이 없어진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명칭이 한때나마 기록상으로 林業技術史上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부끄럽다해야 할 것이다.

④ 1990년 산림청 예규 제 345호 私有林

林木伐採實施要領이 있다.

제 19조 (벌채방법)에 종류로서 (1) 소구역 벌채 (개벌) (2) 택벌 (3) 모수 (4) 왜림작업을 들고 있다. 세부실행방법으로서 개벌은 1개 伐區를 5헥타내외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 5헥타이면 소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조림으로 皆伐作業의 모델이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흔히 細胞式造林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거의 다른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林地가 山岳性이고 山稜이 있고 山腹이 있고 산기슭이 있고 谷部가 있는 복잡한 地形의 林業地盤에는 적용되어서 좋은 作業法이라고 믿어진다. 事實 우리나라 林地의 곳곳에 있어서 이와같은 형식의 조림지를 만나 볼 수 있다. 이것은 作業種의 명칭은 아니고 다만 소면적개발의 개념으로 받아드릴수 있다.

그리고 母樹作業을 설명하는 가운데 헥타당 15~20그루의 종자모수를 남겨둘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택벌작업과 왜림작업의 作業指針의 골격을 설명하고 있다 (2), (48).

⑤國有林林產物賣却規則(1991. 6. 4. 농림수산부령 제 1077호)과 國有林產物賣却施行内規(산림청예규 제359호 1991. 6. 4.)가 있는데 이곳에 伐採方法(갱신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시행예규 제4조(벌채방법)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49).

개벌작업은 1개별구의 면적을 5헥타 내외(경재림단지는 10헥타)로 한다. 이것은 사유림임목벌채실시요령에 있는 표준과 동일하다.

모수작업은 5~10헥타의 범위안에서 실행하되 헥타당 15~20그루의 모수를 散生시킨다. 택벌은 형질이 우량한 林地으로서

天然更新이 확실시 되는 林地에 대하여 실행하되 擇伐率은 材積率기준으로 30%내외로 한다(49).

⑥市道및 다른 관리청소관 國有林營林計劃運營要綱(1974. 1. 17. 산림청예규 제72호)이 있다.

제 11조에 작업종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작업종은 임황 및 사업제한의 여부와 사업의 집약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재림작업

- 가. 대상개벌작업
- 나. 택벌작업
- 다. 대상모수작업

2. 왜림작업

- 가. 대상개벌작업
- 나. 택벌작업

이때 회귀년의 설명을 제13조에 하고 있는데 즉 『회귀년은 택벌작업에 있어 택벌로 인하여 잔존하는 임분의 축적이 벌채전의 축적으로 회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대목의 이해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⑦산림법시행규칙(1992. 2. 22. 농림수산부령 제 1097호) 제10조는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제10조에 다음과 있다.

『간벌, 택벌의 대상목에 대해서는 뿌리부근에 ㊂자라는 극인을 찍으며 또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남겨둘 나무에 대하여 뿌리부근에 ㊂자위 극인을 찍는다.』

이것을 보면 간벌과 택벌에 있어서는 남겨질 나무의 수가 많으므로 오히려 벌채대상목에 극인을 찍고 모수작업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이므로 남겨질 나무에 극인을 찍는 것으로 풀이 된다. 요컨데 벌채대상목의 선정은 기술자 또는 전문가가 미리해 두고 실지 벌채는 작업인에 의해서 기계적으

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간벌과 같은 무육벌채를 갱신벌채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벌채행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본다.

(8) 산림경영을 위한 길잡이라는 75면의 책자를 1993년 산림청에서 간행했다. 그중 제4장 산림작업방법 제8절 나무베기에 다음 3가지 벌채방식이 제공되어 있다.

1. 모수베기(개벌), 2. 골라베기(택벌)
3. 모수작업이 그것이다. 개벌에 있어서는 1개벌구의 면적을 5헥타에 내로하고 단 경제림은 10헥터까지 할수 있다고 했다. 택벌에 있어서 택벌율은 재적율을 기준으로 할 때 30%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다. 모수작업은 1개벌구를 5헥터 이내로 한다고되어 있고 잔존 모수의 수는 10~15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91년의 국유림 임산물 규칙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⑤ 항 참조.

이상 광복후 우리나라의 임업정책에 있어서 내세운 森林作業種(갱신벌채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적으로 등장하는 종류가 등장하고 있고 다만 奉伐作業(또는 漸伐作業)이 舉名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작업요령이 너무 어렵기 때문위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종과 생태적환경으로 보아 제외될

만한 이유에서인가 생각된다. 그러나 산벌 작업못지 않게 어려운 택벌작업이 적용작업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상 산벌작업이 외면 당하고 있는 데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 100년의 林業이라고 말해 볼때 老熟林의 利用伐採에 이어지는 世代交替의 造林技術로서의 更新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營林計劃(또는 施業案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느정도 준수한 것이며 保續生產의 軌道에서 큰 離脫이 없었던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있을때 우리에게는 주저가 있지않을까 한다.

광복이후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未立木地, 또는 低級林整理地에 대한 人工造林이였고 林分造成의 시발이였으므로 森林作業種을 말하기 이전의 단계이다.

때로 成熟林을 벌채하고 그자리에 묘목을 심어 새로운 숲을 만든 것은 皆伐更新法에 해당한다. 대체로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는 人工皆伐更新이 주었다. 燃料林을 조성하고 그뒤 擇伐 또는 皆伐로 갱신하는 요령이 제시되어 있으나 技術이전의 양식으로 벌채이용된 느낌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숲의 경영이 합리적인 계획 아래 기술적으로 이루어 질때 임업선진국의 대열에 끼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정당한 소득, 알뜰한 씀씀이